

ESG 컨설팅보고서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회사명	(주)장업시스템
사업자번호	135-81-27492
대표자	이희종 / 서정우
작성일자	2023년 09월 21일

ESG 컨설팅보고서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Contents

- I.** 개요 (Overview)
- II.** ESG종합평가 (Evaluation)
- III.** 컨설팅 의견 (Consulting Opinion)
- V.** 유의사항 (Disclaimer)
- IV.** 참고자료 (Appendix)

# 01 개요

1. ESG 경영의 이해
2. 국내외 환경변화
3. 대기업 공급망 ESG 관리
4. 중소기업 ESG 경영의 필요성과 목적



# 개요 (Overview)

## 1. ESG 경영의 이해

환경, 사회, 경영(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을 뜻하는 용어로서,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해 의 사결정 과정에서 E, S, G 등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는 경영 및 투자 전략에 해당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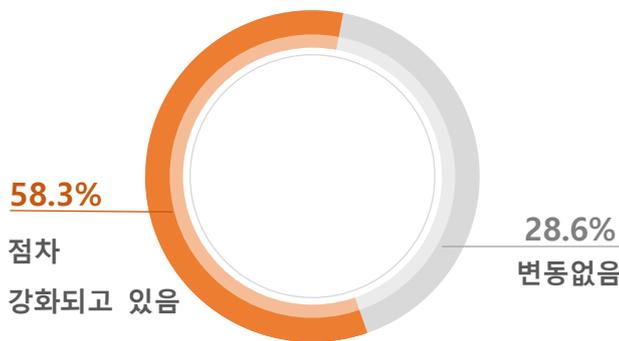
최근 들어 비재무적 요소에 해당하는 환경 및 사회적 이슈가 재무적인 영향까지 유발하는 실질적인 글로벌 리스크로 대두되면서,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제적 손실비용은 저감하고 수익 창출과 새로운 기회 모색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 및 투자를 위해서는 의사결정체계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경영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환경(E)	환경목표 수립, 에너지 사용량 측정, 폐기물 저감 등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슈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업종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사회(S)	노동, 인권, 안전/보건, 공정거래 등 글로벌 ESG 지표에서 요구하는 공통 이슈들과 식품,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업종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입니다.
경영(G)	이사회, 주주총회, 윤리경영 등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경영시스템 관련 사항입니다. 갑질, 인권침해,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수행을 위한 지표입니다.

## 2. 국내외 환경변화

글로벌	탄소국경세, 공급망 실사법 등의 유럽발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3년 45개 국가에서 180개 이상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제가 도입되었으며, 2019년 19개 국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수탁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청사	해외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ESG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은 자사의 ESG 경영 추진과 더불어 협력업체들의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부는 국내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의 ESG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과제로 ESG 공시관련 글로벌 논의 대응,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	국내외 금융기관은 ESG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ESG 우수기업에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상품의 범위나 영역 등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확립,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 ESG 채권펀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3. 대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



대기업의 ESG 요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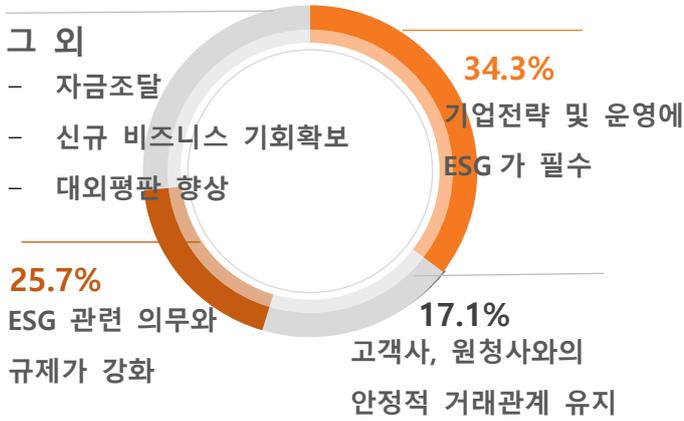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대기업들이 공급망 ESG에 대한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대기업의 협력사 ESG 관리현황' 결과, 주요 대기업 30개사 중 협력사에 대한 ESG 평가를 실시한 기업 비율은 2019년 대비 2021년 약 30%p(9개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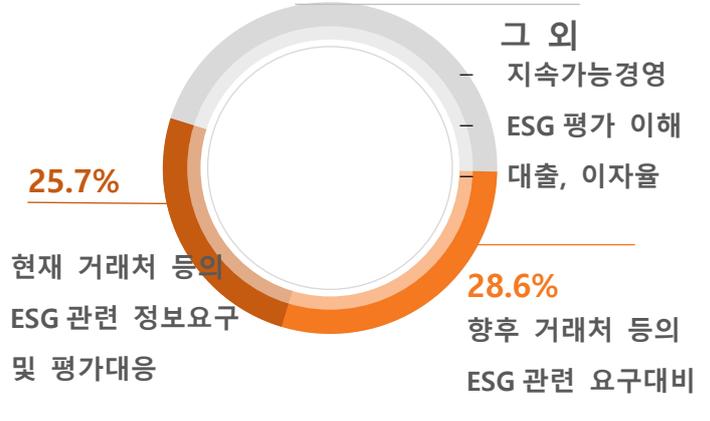
특히 최근 3년('19~'21) 연속 ESG 평가를 실시한 대기업 17개사 중 평가협력사 수를 공개한 14개사의 평가 대상 협력사 수는 평균 10%가 늘어 평가 대상 협력사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ESG 평가 항목 수도 많게는 120개 이상의 문항으로 환경, 안전, 인권, 보건, 윤리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해외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ESG 실행 및 성과결과를 활용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ESG 규제 및 글로벌 평가 대응의 경험을 통해 선진기업 사례를 접하는 등 ESG 관리역량을 갖춘 반면, 수출 비중이 높고 다국적 기업의 2, 3차 협력사 단계에 해당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4. 중소기업 ESG경영의 필요성과 목적



ESG 경영의 필요성



ESG 경영의 목적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경우, 실제로 EU 공급망 실사 법안 도입과 대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ESG 경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협력사 및 수출중소기업 6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급망 ESG 대응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0.0%가 'ESG 평가요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80.6%는 대기업, 28.2%는 해외거래처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급망 내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거래처의 이러한 ESG 요구수준에 미달할 경우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한 개선 유도(20.2%)', '미개선 시 거래정지 및 거래량 감소 (18.5%)' 순으로 영향이 나타나 ESG평가 결과가 거래관계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ESG경영상 당면 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관리해야 할 ESG 실천과제를 정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02

# 종합평가

1. 기업정보

2. ESG 평가 종합의견

3. ESG 등급이력

4. ESG 경영현황 요약

5. ESG 개선과제 Summary



# ESG 종합평가 (Evaluation)

## 기업정보

회사명	(주)장업시스템	
대표자	이희종 / 서정우	
사업자번호	135-81-27492	
법인등록번호	134511-0028701	
산업분류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기업규모/형태	중기업 / 외감	
종업원수	총 120명 - 사무직 39명, 기술직/기능직 81명	
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로 21-8	기준일자 : 2023.09.10
주사업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로 21-8	만료일자 : 2024.09.09

## ESG 평가 종합의견

본사의 ESG 종합평가등급은 2등급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환경·사회·경영시스템 체계 및 성과가 우수한 수준입니다.

환경(E) 평가등급은 4등급으로 회사 내 환경경영 및 관리를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바, 환경관리를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 있으며, 근로자 환경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내부교육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일 현재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2022년 사업영위 과정에서 친환경 제품을 구입한 이력이 전무한 바, 향후 환경경영을 위한 직접적인 실천을 권고합니다.

사회(S) 평가등급은 2등급으로 고용안정성과 고용조건을 비롯한 대다수의 부문은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안전보건투자 부문은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확인된 바, 향후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G) 평가등급은 2등급으로 경영안정성과 윤리경영 부문이 양호한 수준이며, 회계투명성 부문도 무난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 재무제표 기준, 총 자산의 1.9%가 대여금 등으로 사외유출되어 있는 바, 향후 유출자산에 대한 점진적인 회수 노력을 제언합니다.

## ESG 등급이력

평가기준일	만료일	ESG 종합등급	E(환경) 등급	S(사회) 등급	G(경영) 등급
2023-09-10	2024-09-09	ESG2	E4	S2	G2

## ESG 경영현황 요약

- ESG 경영현황 요약표는 이크레더블 ESG 평가항목 중 동사가 자체적으로 개선 및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표 중심으로 정리된 자료입니다.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회사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미흡(N)한 항목의 경우 근거자료(안)을 참고하여 관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환경(E)	Index	근거자료(안)	Status
환경전략	환경전담조직 보유	환경전담부서 포함 조직도	N
	환경관리 및 환경경영 담당자 지정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Y
	환경경영 및 관리 전략 보유	환경경영방침, 목표 및 세부계획	Y
	환경교육 실시	환경교육 결과보고서	Y
	최근 3년 내 환경시설 투자 실시	환경시설투자내역	Y
환경경영	친환경사업 영위	친환경 사업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용역계약서 등)	N
	친환경 제품(투입원재료) 구입	친환경 제품 구매내역	N
환경성과	온실가스배출명세서 작성	온실가스배출명세서	N/A
	에너지원 사용량 관리	에너지원 사용량 관리 내역	Y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관리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폐기물 관리대장	Y
	폐기물 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	폐기물 재활용 또는 감축에 대한 세부계획서	Y
환경관리	환경법규준수 관리	환경법규 관리대장 환경법규준수평가 점검표	N/A
	환경인허가 취득 및 갱신	해당 환경인허가증	Y

사회(S)	Index	근거자료(안)	Status
고용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Y
	급여명세서 지급	급여명세서	Y
	취업규칙 보유	취업규칙	Y
인권존중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협의회 회의록	Y
	강제노동 금지	인권노동 방침	Y
	아동노동 금지		Y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별금지		Y
교육관리	성희롱예방 교육 실시	성희롱예방 교육결과보고서	Y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결과보고서	Y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교육결과보고서	Y
	직장내괴롭힘예방 교육 실시	직장내괴롭힘예방 교육결과보고서	Y
공급망관리	분쟁광물 관리정책 보유	책임있는 공급망 정책 (분쟁광물)	N

\* Status : "Y" 예 "N" 아니오 "N/A"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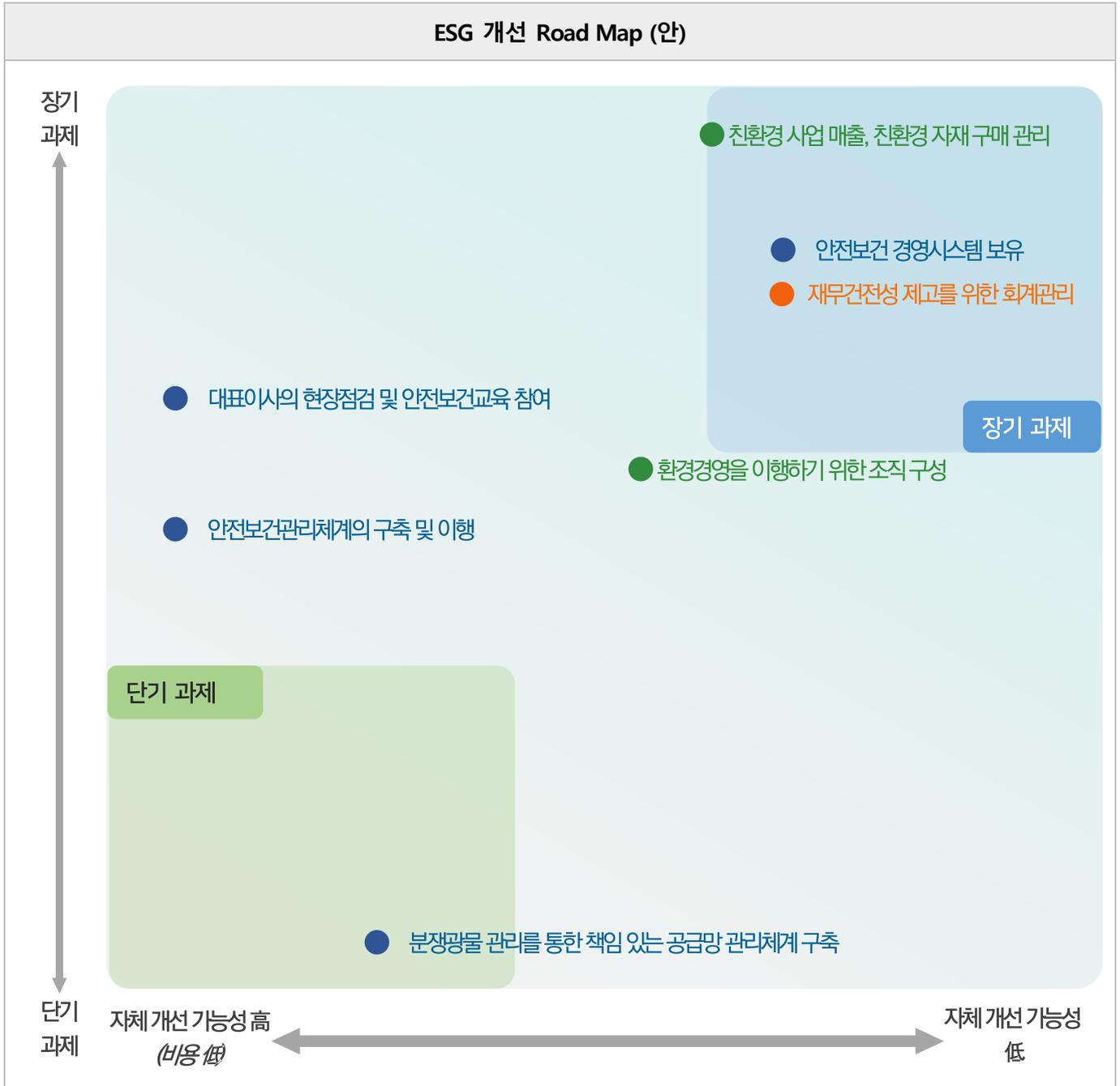
사회(S)	Index	근거자료(안)	Status
안전경영	안전보건관리규정 보유	안전보건관리규정(매뉴얼)	Y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게시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게시사진	Y
	안전보건경영목표 수립	안전보건경영 목표	Y
	안전보건경영목표 세부계획 수립	안전보건경영 세부계획	N
	안전보건경영 성과평가 실시	안전보건경영 성과평가 보고서	Y
	관리자 안전보건업무 성과평가	안전보건 업무성과 평가표	Y
	안전보건 전담조직 보유	안전전담부서 포함 조직도	Y
	안전보건 전담조직 업무분장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Y
안전관리	본사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서 (본사)	Y
	현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서 (현장)	Y
	유해위험물질 관리	유해위험물질관리 절차서	N/A
	기계설비 정비작업 안전관리 절차	기계설비 정비작업 관리 절차서	Y
	개인보호구 지급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Y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표	Y
	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보건점검표	Y
	비상사태대비계획서 보유	비상사태대비 계획서	Y
	비상연락체계 보유	비상연락체계	Y
	비상사태대응훈련 및 교육 실시	비상사태대응훈련 결과보고서	Y
	근로자 의견수렴 채널 운영	건의함 등 의견수렴채널 자료	Y
	대표이사 현장 안전점검 실시	대표이사 안전보건활동 증빙자료	N
	대표이사 안전보건교육 이수	대표이사 안전보건교육 수료증	Y
	안전투자	안전보건예산 수립	안전보건예산 수립 내역
안전성과	산업재해 발생	산업재해조사표	무
	중대재해 발생	산업재해(중대재해)내역 관리자료	무
경영(G)	Index	근거자료(안)	Status
윤리경영	윤리경영교육 실시	윤리경영 교육결과보고서	Y
	내부고발신고체계 보유	내부고발신고체계	Y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보유	내부고발자보호제도	Y
	윤리규정	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한 내부지침	Y
	개인정보보호 규정 보유	개인정보보호 규정	Y
ESG 경영 (상장기업 限)	ESG 정보공개	ESG 정보공개 자료	N/A
	ESG 전담조직 보유	ESG 전담부서 포함 조직도	N/A
	사외이사 전문성 향상 지원	사업보고서 內 이사회에 관한 사항	N/A

\* Status : "Y" 예 "N" 아니요 "N/A" 해당없음

## ESG 개선과제 Summary

- ESG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개선 가능한 우리 회사의 ESG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항목과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여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기 개선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시어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고합니다.

<b>환경</b> Enviro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환경경영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li><li>• 친환경 사업 매출, 친환경 자재 구매 관리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li><li>• 친환경 자재 및 원자재 구매</li></ul>
<b>사회</b> So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분쟁광물 관리를 통한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li><li>•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li><li>• 대표이사의 현장점검 및 안전보건교육 참여활동</li></ul>
<b>경영</b>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회계관리</li></ul>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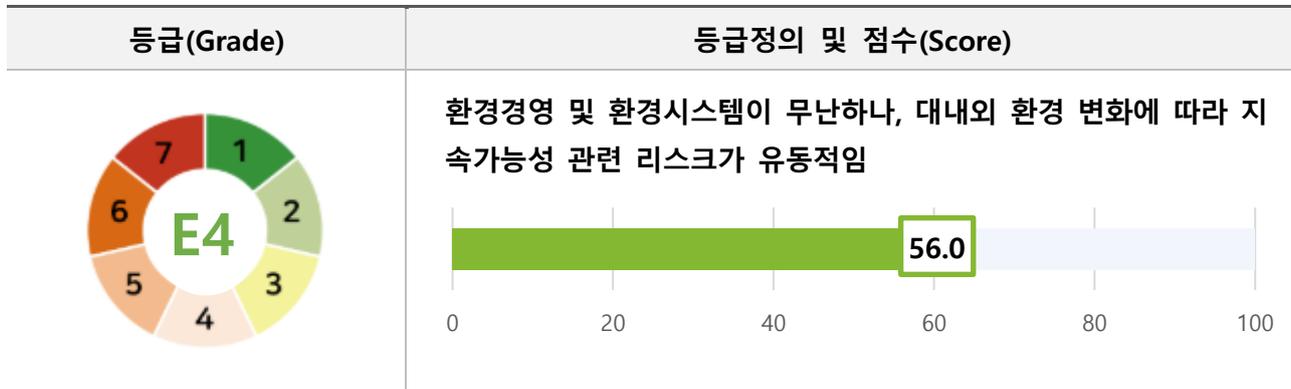
# 컨설팅의견

1. 등급 및 점수
2. 항목별 Status
3. 개선과제 요약
4. 개선과제 세부내용

# 1

## 환경 (Environment)

### 등급 및 점수



### 항목별 Status

구분	ESG 항목	주요 세부 항목	양호	보통	미흡	
E	환경	환경전략	환경 조직 및 교육 운영	●		
		환경경영	환경인증 보유 및 친환경 사업 영위			●
		환경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절감			●
		환경관리	환경법규 준수 여부 등	●		

### 환경(G)부문 컨설팅 의견

개선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환경경영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li> <li>② 환경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 수립</li> <li>③ 친환경 사업 매출, 친환경 자재 구매 관리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li> <li>④ 친환경 자재 및 원자재 구매</li> </ul>
-------	---

## 01. 환경경영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 및 담당자 구성

### 환경경영 이행을 위한 조직의 구성

#### 의의

최근 탄소중립, ESG 등 환경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환경경영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현재 환경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조직 또는 담당자를 구성해야 합니다.

환경조직은 기업이 현재 당면한 환경규제 대응 뿐 아니라, 장기적인 환경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즉, 환경방침 개발, 이행, 검토 및 유지관리를 이행하는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조직에서 전사적인 환경경영 목표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 실무 담당자 선임 및 업무분장을 통한 환경관리

#### 개선방안

조직은 환경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모든 인원에게 필요한 지식 및 숙련도를 파악하고 구성원별 업무를 부여합니다. 환경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환경 이슈를 관리하고 환경 개선 활동을 총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라 조직 내부의 환경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세부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환경조직 및 담당자의 세부업무 범위]

1. 환경시설 인허가, 법규 및 대외 이해관계자 대응
2. 전사 환경경영방침, 목표, 세부추진계획 수립
3. 온실가스, 환경경영시스템, 환경시설 법적 대응
4. 폐수처리장 및 대기배출/방지시설 적법 운영 모니터링
5. 폐기물처리장 운영계획 및 관리
6. ISO 14001 인증 내부심사관리
7.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등록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적법관리

[환경조직 구성 예시]

환경조직			
부서	담당자명	역할	업무 내용
환경전담팀	팀장 000	환경경영 총괄	온실가스 규제 대응, 환경방침 및 전략 수립
	과장 000	환경경영 실무	ISO14001 운영, 환경/에너지 지표 DB 구축 및 목표 대기 실적 모니터링,
	대리 000	이행	환경교육 실시

## 02. 환경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방침, 목표 및 세부 계획 수립

### 의의

#### 환경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

환경경영이란 조직의 사업운영 전 과정에 걸친 환경측면을 관리하고, 준수 의무사항을 충족하며, 리스크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한 활동입니다. 이 때, 환경측면이란 '환경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철공장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는 점, 식음료회사는 '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 환경측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환경경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환경문제를 찾아야 하며 환경측면을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경영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 개선방안

#### 환경경영 이행 및 환경성과 달성을 위한 방침/목표/세부계획 수립

환경경영방침이란 환경경영을 이행함에 있어 기업의 방향 및 계획을 공표하는 것으로, 경영진의 친환경 경영 의지를 표명·확인하고, 전사적 환경 전략 방향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이 때, 방침은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 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환경경영방침을 수립하여 환경경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 목표 및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환경목표는 환경 방침에 근거하여 조직이 스스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정량화하여 설정합니다. 환경 분야 내 영역 중 해당하는 영역을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환경 핵심 영역에는 친환경 제품 생산, 폐기물, 소음 및 악취, 온실가스, 수자원, 대기오염물질 등이 있습니다.

환경경영 세부추진계획은 환경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방안이며 환경 실무자가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이 때, 세부추진계획을 이행할 담당자(담당부서) 및 이행 주기는 필수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세부추진계획 수립 이후 담당자가 계획한 이행주기에 적합하게 이행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며, 이행률이 저조하다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률이 우수하다면 현재목표보다 발전된 새로운 목표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합니다.

**[환경 방침, 목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방안]**

구분	세부 내용
환경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경영과 관련한 내부 및 외부 이슈</li> <li>- 환경 법규의 요구사항</li> <li>-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기반한 조직의 준수의무사항</li> <li>-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사항</li> <li>- 기술적인 기법의 유용성/재정 운용 사업상의 여건</li> <li>- 전년도 환경 성과 및 환경경영방침</li> <li>- 회사의 경영방침</li> </ul>
환경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방침과 일관성</li> <li>- 정량적 지표 제시를 통한 측정가능성;</li> <li>- 모니터링 가능성-</li> </ul>
환경 세부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엇을 완료할 것인지</li> <li>- 누가 책임을 가질 것인지</li> <li>- 언제 완료될 것인지</li> <li>- 측정 가능한 환경 목표 달성을 향한 이행을</li> </ul>

**[환경방침 예시]**

1. 녹색 사업장 구현
  2. 최고수준 친환경 제품공급
  3. 녹색 커뮤니케이션 강화
  4. 친환경, 에너지 경영 실천
- 제품 개발, 생산 등 전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오염물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 [환경경영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예시]

구분	2023 년 환경경영 목표	세부추진계획	이행부서
환경경영강 화	전사 환경경영체제 확립	ISO140001 취득	환경전담팀
	전직원 환경경영 교육 실시	연 1 회 탄소중립 교육 실시	환경전담팀
에너지. 자원 절약을 통한 환경적 기여	2023 년 에너지 사용비용 0 억원 절감	노후설비 00 대 교체	환경전담팀
	2023 년 온실가스 배출량 0% 감축	노후설비 00 대 교체	환경전담팀

### 03. 친환경 사업 매출, 친환경 자재 구매 관리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 밸류 체인별 친환경 활동

##### 의의

기업은 영위하는 사업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야 하며, 환경친화적인 사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함으로써 친환경 경영 정착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즉시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ESG 강화 측면에서 장기적인 사업 계획 내 친환경 사업 계획을 포함하여 준비하고 별도 기록을 통해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 개선방안

#### 친환경 서비스의 개발 및 확대 노력

현재 국제 친환경 흐름의 동향은 기업의 탄소배출량 및 환경부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이 있습니다. 기업이 장기적인 친환경 사업을 수립하는 것은 환경경영을 정착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향후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친환경 사업은 태양광, ESS, 녹색건축인증 등 녹색산업분류체계상의 사업들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 건축물 인증]**

'녹색 건축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의미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과정을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구분	인증대상
신축건축물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기존건축물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그린리모델링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건축물
인증의무 대상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 m <sup>2</sup> 이상 건축물

**[녹색분류체계기준 친환경사업]**

공통		
산업	혁신품목 제조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개발	연구·개발·실증	연구·개발·실증(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과 관련된 제반 활동

온실가스 감축		
산업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 1.전기화(Electrification) 및 전기활용기술(전기가열로 등), 2.수소환원제철 3.비탄산염 4.혼합시멘트 5.불소화합물(F-gas; Fluorinated gases) 대체 및 제거 관련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기술 1.재생에너지 2.수소 3.암모니아 4.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5.제로에너지 건축 6.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CCS) 7.바이오차 8.전기화 및 전기활용기술(전기가열로 등) 9.수소환원제철 10.비탄산염 11.혼합시멘트 12.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기타 추가내용의 경우 환경부 발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참조

## 04. 친환경 자재 및 원자재 구매

### 의의

#### 전과정 친환경 활동

기업의 환경경영 이행은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더 나아가 사업 전 과정에 걸친 환경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때, 기업의 조직경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환경경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품 공급 등의 단계에서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친환경 제품 및 자재의 구매확대 노력

기업의 조직경계 외에서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은 친환경 원자재 구매가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를 구매함으로써 공급망 단계의 환경부하를 감소시키고, 제품 전 과정의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직은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구매하여 공급망 단계의 환경성을 추구할 수 있으나, 친환경 제품이 아님에도 친환경성을 주장하는 '그린워싱' 상품을 소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친환경 자재는 고효율기자재, 환경성적표지, 환경표지, HB 마크, GR 마크 인증 등이 있으며, 친환경 자재 구매 시 유효한 환경 인증서는 공급사로부터 확보하여 보관할 것을 권고합니다.

#### [친환경 자재, 원자재]

※환경/에너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외부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재를 기준으로 함.

#### 환경표지인증 가능대상제품\_공통

복합용도 및 기타	
플라스틱·고무·목재 제품류	합성수지 제품, 고무 제품, 목재 성형 제품, 생분해성 수지 제품, 구조재용 합성수지 성형 원료, 목재·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
금속·무기재료·요업 제품류	단련용 동 합금, 주물용 동 합금, 무기성 토목·건축 자재, 슬래그 가공 제품, 블록·타일·판재류, 골재 및 미분말

환경표지인증 가능대상제품\_제조

산업용 제품, 장비	
원료·자재류	인쇄용 및 필기용 잉크, 산업용 축전지, 수산양식용 부자, 산업용 세정제, 포장재, 수처리제, 탈취제, 제설제, 윤활유, 산업용 리튬이온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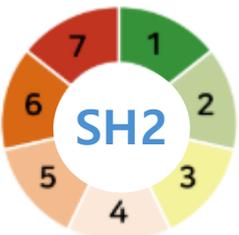
환경표지인증 가능대상제품\_건설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전기 자재류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안정기 내장형 램프, 방전램프용 안정기, 전선케이블, 전기 손 건조기, LED 일반조명용 램프, LED 등기구, LED 광원 패키지 및 모듈
기타 자재류	페인트, 벽지, 보온·단열재, 건설용 방수재, 투수 콘크리트 제품, 실내용 바닥 장식재, 조립식 바닥 난방 시스템, 벽 및 천장 마감재, 층간 소음 방지재, 창호 및 창호 부속품, 접착제,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이중 바닥재, 장식용 섬유 제품, 초배지, 장식용 합성가죽, 인조 잔디 및 인조 잔디 구성 부품, 바닥데크용 방부목재, 건축용 실링재
설비류	가스보일러, 히트펌프 시스템, 열 회수 환기 장치, 소방용 스프링클러헤드, LED 전광판, 산업용 가스보일러, 무정전전원장치

# 2

## 사회 (Social)

### 등급 및 점수

등급(Grade)	등급정의 및 점수(Score)
	<p>안전보건경영 및 사회적책임성과가 우수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가 낮음</p> 
	<p>안전보건경영을 위한 관리체계가 우수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가 낮음</p> 

### 항목별 Status

구분	ESG항목	주요 세부 항목	양호	보통	미흡	
S	고용	정규직 전환 및 임금체불 등	●			
		고용조건	●			
	사회	인권존중	근로자 소통 및 인권존중	●		
		사회공헌	취약계층 고용, 기부금 지출 등	●		
		교육관리	임직원 교육 투자 및 시행	●		
	고객	공급망관리	품질관리, 거래처 관리 등	●		
	안전	안전보건경영체계	안전보건조직 및 규정	●		
		안전보건운영관리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점검 및 교육 등	●		
		안전보건투자	안전보건 인증보유 및 예산수립			●
		안전보건성과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현황, 안전보건 포상	●		

## ■ 사회(S)부문 컨설팅 의견

<b>개선 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분쟁광물 관리를 통한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li><li>②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li><li>③ 대표이사의 현장점검 및 안전보건교육 참여활동</li><li>④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 45001 등) 보유</li></ul>
------------------	--

## 01. 분쟁광물 관리를 통한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 의의

#### 분쟁광물 관리의 목적

분쟁광물은 주로 콩고민주공화국 및 그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4 대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의미하며 그 대상국은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해 수단, 르완다, 브룬디 등 중앙프리카 10 개국입니다. 분쟁광물은 채굴 지역의 반군, 정부군 등 무장세력이 광물의 채굴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어 채굴 및 유통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침해와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문제와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 또한 지속 야기하고 있습니다.

#### **[목적 : 국제적 규제 강화]**

2010 년 분쟁광물 규제 조항이 포함된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에 따라 미국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매년 공시하여야 하며, 국내 기업들 또한 최근 해당 정보를 공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또한 국제적 환경에 발맞추어 분쟁광물에 대한 관리 및 사용을 준비하는 추세입니다.

### 개선방안

#### 분쟁광물 프로세스 도입

해당 지역에서 불법적인(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채굴된 광물을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분쟁광물 관리 프로세스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분쟁광물 관리를 위한 규범(규약 등) 제정, 현재 사용중인 분쟁광물의 현황 파악,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프로그램(CFSP) 인증을 취득한 제련소 파악 등 다양한 활동이 요구됩니다.

(RMI 공식 홈페이지 참고 : <https://www.responsiblemineralsinitiative.org/>)

[분쟁광물 관리 관련 참고 사례]

구분	세부사항																												
<p>삼성전자 협력사 규범</p>	<p><b>4.7 공급망 규제물질 관리</b></p> <p><b>1) 정의</b></p> <p>공급망 규제물질이란 제품 내 사용 또는 제화 생산과 관련 각 국가별 법규나 국제 규정에 따라 공급망에서 이용이 제한된 재료 물질 또는 자재입니다.</p> <p>여기에는 분쟁 광물, 전략 물자, 불법 목재 등이 포함되며 소재 또는 원재료의 취득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으로 인해 이의 부적절한 사용은 반 사회적/윤리적 행위로 간주됩니다.</p> <p>따라서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는 책임있는 공급망의 일원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어 사용을 제한하는 특정 원산지의 광물(탄탈륨, 텅스텐, 주석, 금, 코발트 등)과 불법 벌목된 목재의 원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당사 공급망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p>																												
<p>RMI CMRT</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Select Language Preference Here:                  衝突 광물 정보                  冲突 광물 정보 (중국어)                  冲突 광물 정보 (한국어)                  Sélection la langue préférée ici                  Selezione la lingua preferita qui                  Wählen sie hier die Sprache:                  Selezione la lingua di preferenza qui                  Burada dil tercihi belirleyiniz</p> <p>이 문서는 제품에서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의 구매 원본을 추적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b)(1)로 표시된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 방법은 지침서를 참조하십시오.                  기업 정보</p> </div> <div style="width: 50%;"> <p><b>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CMRT)</b></p> <p>한국어 Korean</p> <p>Revis New</p> <p>이 문서는 제품에서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의 구매 원본을 추적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b)(1)로 표시된 것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 방법은 지침서를 참조하십시오.                  기업 정보</p> </div>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기업명 (*)</td> <td style="width: 50%;"></td> </tr> <tr> <td>선언 범위 또는 글래스 (*)</td> <td></td> </tr> <tr> <td>선언 범위 설명란</td> <td></td> </tr> <tr> <td>사업 등록 번호</td> <td></td> </tr> <tr> <td>사업 등록 번호 앞쪽</td> <td></td> </tr> <tr> <td>주소</td> <td></td> </tr> <tr> <td>담당자 (*)</td> <td></td> </tr> <tr> <td>담당자 이메일 (*)</td> <td></td> </tr> <tr> <td>담당자 전화번호 (*)</td> <td></td> </tr> <tr> <td>책임자 (*)</td> <td></td> </tr> <tr> <td>책임자 직위</td> <td></td> </tr> <tr> <td>책임자 이메일 (*)</td> <td></td> </tr> <tr> <td>책임자 전화번호</td> <td></td> </tr> <tr> <td>서명일 (*)</td> <td></td> </tr> </table>	기업명 (*)		선언 범위 또는 글래스 (*)		선언 범위 설명란		사업 등록 번호		사업 등록 번호 앞쪽		주소		담당자 (*)		담당자 이메일 (*)		담당자 전화번호 (*)		책임자 (*)		책임자 직위		책임자 이메일 (*)		책임자 전화번호		서명일 (*)	
기업명 (*)																													
선언 범위 또는 글래스 (*)																													
선언 범위 설명란																													
사업 등록 번호																													
사업 등록 번호 앞쪽																													
주소																													
담당자 (*)																													
담당자 이메일 (*)																													
담당자 전화번호 (*)																													
책임자 (*)																													
책임자 직위																													
책임자 이메일 (*)																													
책임자 전화번호																													
서명일 (*)																													

## 0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를 위한 리스크 관리

#### 의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내실화

#### 개선방안

대표이사의 의지를 포함하여 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사업에서의 리스크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위험요인, 법규준수,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등) 를 파악하고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절차·시스템개선, 점검, 교육, 회의 등의 범주에서 구체화, 정량화·수치화 하여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실시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며, 현장 안전점검·모니터링과 현장 안전리더십 활동 등을 포함하여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안전보건경영 관련 성과평가는 안전보건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실시계획의 이행을 확인, 결과에대한 원인분석, 보완사항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구체화, 정량화·수치화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성과평가 회의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고 안전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관리자의 안전보건 업무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역할과 책임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구체화, 정량화/수치화 하여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성과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의 실질 이행기반 마련을 권고합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경영의 일부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심각한 작업 차질과함께 품질, 생산성 및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2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참고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03. 대표이사의 현장점검 및 안전보건교육 참여활동

#### 의의

#### 대표이사 안전보건 활동 참여의 필요성

최근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면서 중대재해 다수발생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여부 뿐만 아니라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여부 및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독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반영되는 경영진 리더십, 안전관리 목표·방침, 인력·조직, 예산·투자, 위험요인 관리체계, 도급인의 책임·역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감독결과를 보면 본사 내 안전관리 전담조직 설치, 별도 예산 편성, 위험성 평가체계 구축 등을 갖추었으나, 전담조직의 전문성 부족, 안전관련 예산 감소, 형식적 위험성 평가 등 관리체계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근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재해·시민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최고경영자의 안전 리더십, 안전보건 조직 및 계획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갖추고 안전인력의 역량을 지속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안전보건 활동 참여

대표이사 및 경영진은 기업의 안전·보건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솔선수범의 자세로서 안전·보건 활동을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안전보건 점검, 협의체 회의 및 간담회 등 다양한 안전·보건 리더십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지속적 성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진의 지지가 근로자 안전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논문에 따르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행동모형(안전 분위기-안전지식-안전동기 및 행동)과 연관하여, 안전 분위기는 경영진의 지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안전 분위기는 근로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구현되지만, 안전 분위기를 동기화 시키는 최초의 조직적인 행위는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한승조·배영민,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진의 지지가 근로자 안전인식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2021, 19권, 7호, 155p ~ 162p, eISSN 2713-6442

### 04. 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 45001 등) 보유

#### 의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기업 내 물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을 일컫고 있으며 조직의 규모, 산업 및 지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사업장 관련 리스크를 줄이고, 직원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통해 조직의 안전보건 목표는 달성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국제 규격으로는 ISO45001, OHSAS18001 등이 있으며, 국내 규격으로는 KOSHA-MS, K-OHSMS 등이 있습니다.

#### [ISO 45001 및 KOSHA-MS]

구 분	내 용
ISO 45001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에서 2018년 3월에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국제규격입니다. ISO 45001의 목표는 산업재해 및 질병의 감소입니다. 기존에 OHSAS 18001이 ISO의 HLS(High Level Structure)를 적용하여 정식 규격인 ISO 45001로 전환되었습니다.
KOSHA-MS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주의 자율적인 안전 및 보건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서 개정 전에는 KOSHA 18001 이었으나 2019년 5월 KOSHA-MS로 개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안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인증받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외부 인증기관을 통해서 교육, 컨설팅, 심사 등 내부적인 절차를 수행한 뒤,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자율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증 심사절차로는 안전보건 요구사항 교육, 경영시스템 프로세스 구조 개선 검토 등이 포함된 1단계 심사, 1단계 실태심사에서 적합 판정 혹은 부적합 시정조치 확인 및 경영체제 인증계획 수립, 안전보건 프로세스 제정 등 2단계 심사 마지막으로 1, 2단계 심사가 완료되고 부적합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검토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ISO 신규 인증 심사 절차 예시]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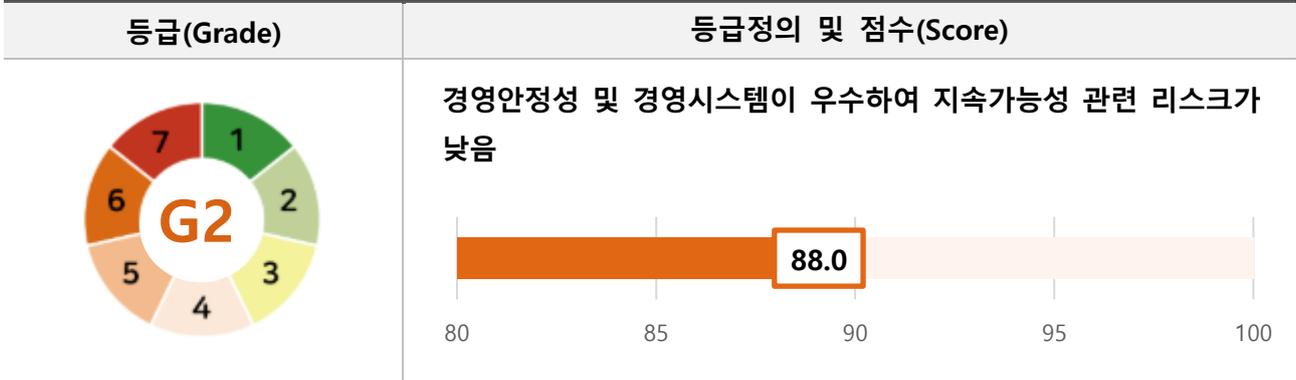


<b>STEP 1</b> 1단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내부심사/경영검토 심사</li><li>• 부적합 사항은 2단계 인증심사 전까지 시정조치 되어야 함</li></ul>
<b>STEP 2</b> 2단계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단계 실태심사에서 적합 판정 혹은 부적합 시정조치 확인 후 2단계 심사진행</li><li>• 2단계 심사 부적합 사항은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되어야만 인증서 발급이 가능</li></ul>
<b>STEP 3</b> 인증서 발급 및 사후/갱신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2단계 심사가 완료되고 부적합 시정조치가 확인되면 검토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서 발급</li><li>• 이후 6개월~12개월 주기로 사후심사 / 3년 주기로 갱신심사 진행</li></ul>

# 3

## 경영 (Governance)

### 등급 및 점수



### 항목별 Status

구분	ESG 항목	주요 세부 항목	양호	보통	미흡	
G	경영	경영안정성	주주구성, 대표자 Risk 등	●		
		회계투명성	외부감사 실시, 자금유출 및 특수관계자 거래		●	
		윤리경영	윤리경영 및 정보보안	●		

### 경영(G)부문 컨설팅 의견

개선 과제	①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회계관리
-------	---------------------

## 01.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회계관리

### 의의

#### 회계관리를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재무제표상 존재하는 가지급금, 대여금 계정 등과 같은 것들은 사외 유출된 자산으로 해당 자산이 과다할수록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다소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세법상 개념으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혹은 증빙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인정이자 등의 세법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대여금이란 금전을 대여해준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으로 사업상 필요하여 대여해준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도 존재하여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이 많을수록 실질 자본력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개선방안

#### 사외유출자금 회수 및 증빙불비 자금 확인

사외유출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자금과 회수 불가능한 자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자금의 경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손상각 처리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의 경우에는 기업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회수가 필요한 경우 체계적인 회수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회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의의

#### 비정상적 특수관계자 간 거래 지양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부당행위부인 등의 규정을 통해 공정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목적(조세 절감, 편법 증여 등)인 경우 해당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다소 저하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례 : E기업의 특수관계자 간 내부거래 및 회계부정]

가족끼리 300억 내부거래한 엘파텍...증선위, 대표 해임 권고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3-02-09 10:00 송고

영 가 음



반도체 부품 제조사 엘파텍이 '특수관계인'과의 300억 상당 내부거래를 회계장부에 적지 않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질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 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의 '해임 및 직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증선위는 지난 8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 제표를 작성·공시한 엘파텍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엘파텍은 지난 2018년에 220억원, 2019년에 92억원 가량을 '특수관계자'인 A사, B사의 대표이사와 그의 두 아들과 거래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처 : 공감언론 NEWSIS 기사 참고

개선방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권고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정상 거래와 비정상적 목적의 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거래 목적을 가진 경우 정상 거래로 생각되며, 해당 거래가 많다고 해서 재무제표의 신뢰성과는 무관합니다. 비정상적인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재무제표상 현재는 정상 매출로 계상된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에 대한 신뢰도도 다소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인 회계와 세무 투명성 및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정상적인 특수관계인 거래를 지양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 내부거래를 지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수관계자의 정의]

구분	세부 내용
특수 관계자	<p>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함.</p> <p>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은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을 소유·지배하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모두 포괄함.</p> <p>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회사) 여부 판정 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동일인의 배우자 및 친, 인척 (6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li> <li>② 동일인 등이 설립 또는 지배하는 비영리법인</li> <li>③ 동일인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계열회사)</li> <li>④ 동일인 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계 존재 유무를 결정함.</li> </ol>

04

# Appendix

샘플자료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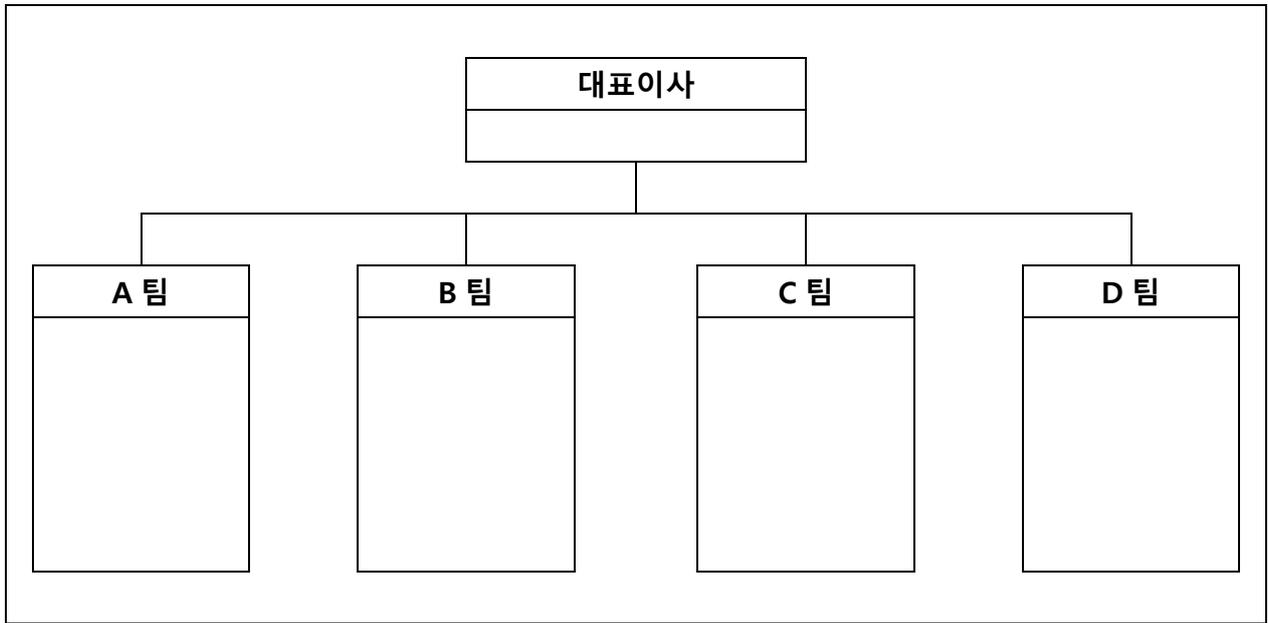
# IV

# 샘플자료

구분	샘플자료
환경 (E)	조직도 및 업무분장
	환경경영방침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사회 (S)	책임있는 공급망 정책(분쟁광물 관련)
	인권노동 방침
	안전보건조직도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안전보건 점검활동 (예시)
	산업재해조사표
지배구조 (G)	윤리서약서
	정보보안규정
	정보보호서약서

붙임 1. 조직도 및 업무분장

조직도



업무분장

부서	담당자	역할	업무내용

## 붙임 2. 환경경영방침

# 환경경영방침

XX 주식회사는 XXXXXX 을 생산함에 있어서 환경경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환경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체계를 확립한다.

### 1. 전략 수립

환경 및 에너지경영체계 수립을 위한 목표 및 세부계획을 수립을 통한 체계를 구축한다.

### 2. 환경법규 준수

환경법규를 준수하며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 등을 관리함으로써 외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 3. 에너지관리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저감시킬 수 있는 설비의 도입 또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직접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XX . XX . XX

XX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붙임 3.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 환경경영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No.	목표	세부추진계획	담당자	시행주기	비고
1					
2					

#### 붙임 4. 책임있는 공급망 정책(분쟁광물 관련)

분쟁 지역 및 고위험 지역에서 코발트 및 원재료 구매

##### 소개

○○○은 생산하는 제품의 책임감 있는 원재료 공급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 배터리 산업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책임 있고 투명한 공급망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책임감 있는 공급망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은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가이드 (“OECD 실사 가이드”)을 준수하며 이를 공급망 활동 전 반에 걸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법규 준수

○○○은 3TG (Tin, Tantalum, Tungsten, Gold)로 알려진 분쟁 광물과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광물인 코발트, 리튬, 흑연, 니켈, 망간 조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할 것입니다. 또한 ○○○은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및 UNGC (UN Global Compact) 원칙, 산업 표준, 기타 관련 법규 등 가장 높은 수준의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평가를 통한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확보

○○○은 정기적으로 지속 가능성 평가를 하여 공급망 관리에 대한 파트너사의 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 인권, 환경, 안전,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이슈와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수행합니다. ○○○은 OECD 실사 가이드에 따라 주요 공급망에 대한 제3자 Audit을 시행하여 상위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자 Audit 결과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 및 개선 활동을 통해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붙임 5. 인권노동 방침**

○○○은 경영이념인 '인간존중의 경영'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행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본적인 가치로 실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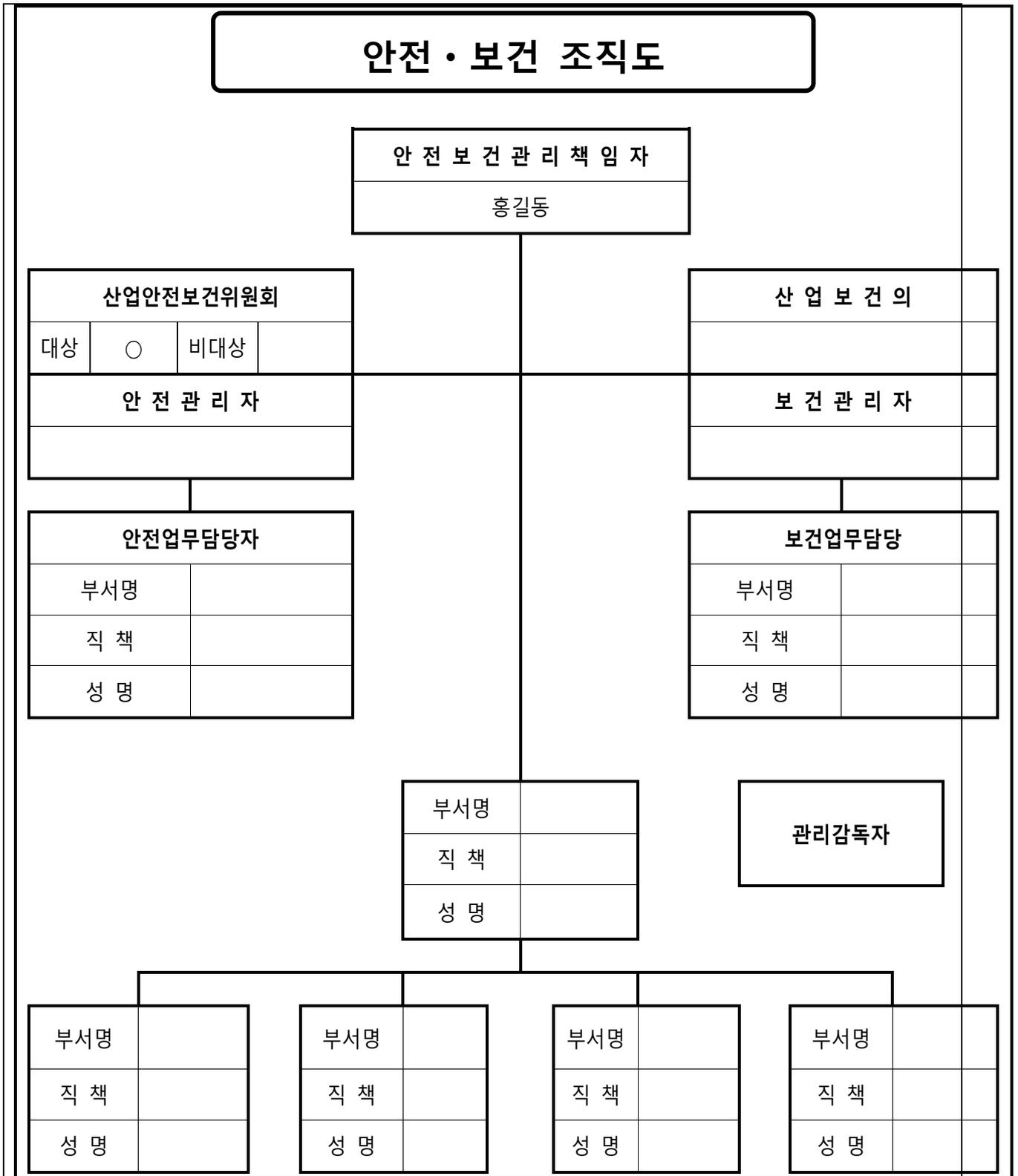
이를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 인권·노동 원칙,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핵심협약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표준을 지지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노동법을 준수한다.

○○○은 본 글로벌 인권노동 방침을 전세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 및 노동 관련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한다.

더 나아가 본 방침을 임직원, 고객 및 협력회사 등 ○○○의 사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인식개선 및 확산에 기여한다.

구 분	내 용
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강제노동 금지	정신·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고용조건으로 개인의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 원본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동노동 금지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며, 만 16세 미만의 아동노동은 일괄적으로 금지한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야간근무 및 초과근무 포함)를 부여하지 않는다.
차별 금지	모든 임직원에게 채용과 승진, 보상, 훈련 등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성별, 연령, 인종, 종교, 노조활동, 장애, 임신, 결혼여부 및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
근로시간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정규,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초과 근로 시(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는 관련법에 근거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임금 및 복리후생	모든 임직원에게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결사의 자유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임직원이 협박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회사와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노동조합 결성,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붙임 6. 안전보건조직도



붙임 7.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보호구 지급 대장								
번호	지급일자	부서	성명	지급 수량			서명	
				귀마개	귀덮개	방진마스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붙임 8. 안전보건 점검활동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 점검일자 :</span> <span>■ 점검자 :</span> </div>			
구분	점검항목	양호	보통
작업장 일반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가?		
	2. 작업장 바닥을 미끄럽게 하는 기름 등은 즉시 제거되고 있는가?		
	3. 바닥면과 높이의 차이가 있는 곳(턱진곳, 문지방 등)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가?		
	4. 받침대, 선반 등은 손상되지 않았으며, 작업자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위험은 없는가?		
	5. 작업장 바닥의 개구부(배수로, 하수도, 지하핏트의 구멍 등)은 안전하게 덮였는가?		
	6. 재료, 반제품 및 생산품은 저장과 적재가 안전하고 사용에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		
	7. 작업자 1인당 최소 1.5m <sup>2</sup> 의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8. 위험구역에는 위험,경고 표시 및 접근방지 대책이 마련 되어 있는가?		
	9. 작업장의 통로는 충분히 확보되어서 통로표시가 되어 있으며, 통로나 계단에 작업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설비나 자재 등이 놓여 있지 않은가?		
계단 및 난간대	10. 추락위험이 있는 계단과 바닥의 측면에는 90cm이상의 난간대(핸드 레일)를 설치하였는가?		
조명	11. 작업장의 조명은 충분한가?		
온도 및 통풍	12. 작업실의 실내온도는 알맞게 유지되고 있는가?		
	13. 작업실의 통풍은 충분한가?		
	14. 화재위험물질과 건강유해물질은 물질의 발생장소에서 즉시 제거되고 있는가?		

**붙임 9.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I.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 내 수급인 소속 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⑥재해자가파견근로자인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 재관리번호(사업개시 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 류(질병 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III. 재해	재해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발생 개요 및 원인	발생 개요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IV. 재발 방지 계획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b>(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b>			
재해 분류자 기입란 <small>(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small>		발생형태 □□□	기인물 □□□□□
		작업지역·공정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m <sup>2</sup> ) 또는 중질지(80g/m <sup>2</sup> )]			

붙임 10. 윤리서약서

##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나는 XX 주식회사 임직원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을 만드는데 앞장서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항상 윤리경영 실천사항을 숙지하고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2. 금품, 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을 지키겠습니다.
3. 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자부심을 가지며 어떠한 불공정거래  
및 부정, 비리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4. 나는 업무나 행동에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윤리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사나 윤리경영 전담부서에 문의하겠습니다.

상기 각 항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XX 년 X 월 X 일

위 서약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XX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붙임 11. 정보보안규정

# XX 주식회사 정보보안규정

제정 20XX. X. XX.

## 제 1 장 총 칙

1.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회사기밀 및 고객정보 보호에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영업 비밀 등 기술상, 경영상의 내용 자체와 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기타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3. 제 3 조 [보안조직]

회사는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보안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보안책임자, 보안관리자, 부서별 보안담당자로 구성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제 4 조 [비밀유지 의무]

임직원은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제 2 장 개인정보 보호

5. 제 5 조 [개인정보보호 원칙]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 12. 정보보호서약서

## 정보보호 서약서

나는 XX 주식회사 임직원으로서 아래 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XX 주식회사에 관한 정보와 비밀유지 대상으로 지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한다.
2.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각종 문서, PC 및 매뉴얼 등 정보 기록매체에 대하여 파괴, 유출, 변조, 복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한다.
3. 나는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는다.
4. 나는 XX 주식회사의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외부정보를 수집하거나 접근을 시도하지 않으며, 개인 및 회사의 정보자산을 임의로 반입, 반출하지 않는다.

상기 각 항의 서약사항을 숙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하며, 위반했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민, 형사상 책임과 보안 관련 제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XX 년 X 월 X 일

위 서약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XX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IV

## 지원사업

## 제1장. 환경 지원사업

No	지원사업명	지원분야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1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지원사업	○	○	○	-
2	FEMS 보급 지원사업	-	○	○	-
3	가스 수요 절감 프로그램	-	-	○	○
4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	○	○	-
5	신재생에너지 보급(건물지원) 사업	-	○	-	-
6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	-	○	○	-
7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컨설팅	-	-	○	○
8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	○	○	-
9	제품법 이행지원	-	-	○	○
10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업	-	-	○	-
11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	-	-	○	-
12	영세사업장 악취기술지원	-	-	○	-
13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 (환경닥터제)	-	-	○	-
14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	○	-	○	-
15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	-	○	-
16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및 세제지원	-	○	-	○
17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	○	○
18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	-	-	○
19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	○	-	○
20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	○	-	○
21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지원사업	-	○	-	○
22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	-	-	○
23	ESG 환경성 컨설팅	○	-	○	-
24	환경신기술 수수료 지원	-	-	-	○
25	녹색인증 지원	-	-	-	○
26	2023 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	○	-	○
27	2023 년 제 1 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	-	-	○
28	산업통상자원부-SK 기술나눔	-	-	-	○

29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기술나눔	-	-	-	○
30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 추진 : KEEP+	-	○	○	○
31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	○	-	-
32	신성장기반자금		○		○
33	녹색보증	-	○	-	○
34	기후환경보증	-	○	-	○
35	신재생에너지보증	-	○	-	○
36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	-	○	-	○
37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	-	-	○
38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R&D)	-	-	-	○
39	중소기업 Net Zero 기술혁신개발사업(R&D)	-	-	-	○
40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보급사업	-	○	○	○
41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	○	-	○
42	e-safe 환경안전 기술지원단 운영	-	-	○	○
43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지원	-	-	○	○

※ 지원사업 운영기간은 사업운영기관별 상이한바, 별도 확인 필요

NO.1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지원사업
<b>지 원 대 상</b>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21년 실적 기준)인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 사업장
<b>사 업 운 영 기 관</b>	총괄 : 산업통상자원부 / 운영 : 한국에너지공단
<b>사업목적</b>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인프라 구축 컨설팅, 에너지사용현황의 실시간 계측·제어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경영시스템기반의 스마트 에너지공장 인프라 구축 지원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인프라 구축 컨설팅</li> <li>② 스마트 에너지공장 인프라 구축 지원</li> </ul>	

NO.2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FEMS 보급 지원사업
<b>지 원 대 상</b>	스마트그린산단에 입주한 중소, 중견사업장
<b>사 업 운 영 기 관</b>	한국에너지공단
<b>사업목적</b>	
공장의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FEMS) 지원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통합관리 시스템(FEMS) 지원</li> </ul>	

NO.3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가스 수요 절감 프로그램
<b>지 원 대 상</b>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1 조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는 업체 중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산업체 및 건물
<b>사 업 운 영 기 관</b>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b>사업목적</b>	
자발적으로 도시가스 (LNG)를 절감한 산업체 및 건물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동절기 도시가스 수요절감과 수급안정을 도모	
<b>지원내용</b>	
① 도시가스 (LNG)를 절감한 산업체 및 건물에 장려금을 지급	

NO.4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b>지 원 대 상</b>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업장, 비영리법인,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회적협약기업
<b>사 업 운 영 기 관</b>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b>사업목적</b>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절감량 계측을 지원하여 에너지효율시장 창출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	
<b>지원내용</b>	
① 사업장에 효율향상설비 개체지원 및 계측전송장치를 지원하여 계측기반 절감성과를 산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효율관리기자재 등 18 개 지정설비 및 기존설비대비 5% 이상 절감이 예상되는 제안 설비)	

NO.5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신재생에너지 보급(건물지원) 사업
<b>지 원 대 상</b>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 26 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
<b>사 업 운 영 기 관</b>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b>사업목적</b>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 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b>지원내용</b>	
①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 지원	

NO.6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
<b>지 원 대 상</b>	전국 모든 산업단지와 제조업 밀집지역 내 중소/중견 제조업
<b>사 업 운 영 기 관</b>	산업통상자원부
<b>사업목적</b>	
산단 내 사업장에 청정생산 기술을 적용하여 4 대 오염물질(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을 원천적으로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b>사업장 진단:</b> 전문 진단팀이 환경관리 취약점 분석(운영 진단)과 생산공정 진단을 통하여 청정생산 도입을 위해 필요한 개선안 도출</li> <li>② <b>공정개선·설비교체 등 맞춤형 지원:</b> 사업장 진단 결과에 따른 효과성 높은 공정개선·설비교체 등의 개선안에 대하여 국비 보조</li> </ul>	

NO.7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컨설팅
<b>지 원 대 상</b>	어린이용품 제조 또는 수입기업 (환경유해인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용품 기업)
<b>사 업 운 영 기 관</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사업목적</b>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사용저감·관리를 위한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환경유해인자 관리역량 제고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업별 맞춤형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 및 관리 컨설팅</li> <li>②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분석, 원부자재 변경 등 지원</li> <li>③ 어린이용품 관련 제도 교육 실시</li> <li>④ 환경부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저탄소 인증 획득 지원(필요 시)</li> </ul>	

NO.8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b>지 원 대 상</b>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b>사 업 운 영 기 관</b>	한국환경공단
<b>사업목적</b>	
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 오염물질 최소화,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생산 시스템 구축 지원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li> <li>② 설비의 설치·개선 자금 지원</li> </ul>	

NO.9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제품법 이행지원
<b>지 원 대 상</b>	화평법/ 화관법/ 제품법 대상사업체
<b>사 업 운 영 기 관</b>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b>사업목적</b>	
열악한 경영여건으로 제도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화학산업계 중점으로 화학3법 (화평법/ 화관법/ 제품법)의 제도이행을 지원	
<b>지원내용</b>	
<p>① 살생물제 승인 지원</p> <p>: 승인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 중 중소기업 위주로 제조·수입하는 물질을 지원대상물질로 선정</p> <p>: 물질협의체 컨소시엄 구성 지원</p> <p>: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맞춤형 컨설팅</p> <p>② 살생물제 관련 교육·홍보 지원</p> <p>: 권역별·산단별 순회교육 실시 및 이행 가이드 마련 제안</p> <p>: 살생물제 운영협의회 및 제도이행 상담센터 운영</p>	

NO.10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사업
<b>지 원 대 상</b>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등 우대)
<b>사 업 운 영 기 관</b>	환경환경산업기술원
<b>사업목적</b>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b>지원내용</b>	
①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1:1 컨설팅	

NO.11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지 원 사 업 명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
지 원 대 상	국제환경규제 기업
사 업 운 영 기 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_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b>사업목적</b>	
Compass 시스템에 대한 문의사항 접수 및 답변	
<b>지원내용</b>	
①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상담지원 / ( <a href="https://www.compass.or.kr/qna/list#">https://www.compass.or.kr/qna/list#</a> ) ② 환경규제대응 온라인 상담지원 / ( <a href="https://www.compass.or.kr/online/list">https://www.compass.or.kr/online/list</a> )	

NO.12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지 원 사 업 명	영세사업장 악취기술지원
지 원 대 상	중소환경기업 (제조업) (중소기업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사 업 운 영 기 관	한국환경공단
<b>사업목적</b>	
악취방지법 제21조 (악취기술지원)에 따라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 등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악취취약사업장의 악취관리능력 제고 및 사업장 주변의 환경개선	
<b>지원내용</b>	
① 컨설팅 및 측정분석비용 무상지원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실태 파악, 악취원인물질 조사 및 측정분석, 악취방지대책 제시 및 사후관리, 악취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NO.13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 (환경닥터제)
<b>지 원 대 상</b>	[지자체 지원 사업(*경기도)]- (도내 전지역)80 개소
<b>사 업 운 영 기 관</b>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b>사업목적</b>	
<p>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예방적 관리와 도내 사업장이 겪고 있는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도움으로써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로 환경오염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환경관리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하며, 환경기술인에 대한 환경관리 능력 향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p>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기/수질/악취분야 환경오염도 측정</li> <li>② 배출/방지시설 개선 및 사업장 준수사항 이행방법 등 기술지원</li> </ul>	

NO.14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
<b>지 원 대 상</b>	산업발전부문 중소 중견기업
<b>사 업 운 영 기 관</b>	한국에너지공단
<b>사업목적</b>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 업체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에너지 사용현황 실시간 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와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실질적 에너지절감 활동 지원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본 구축 컨설팅</li> <li>② 계측 인프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li> <li>③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한 에너지절감 활동 지원</li> </ul>	

NO.15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b>지 원 대 상</b>	생태독성 기술지원 대상시설: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시설 제외), 공공하·폐수처리시설 TOC 기술지원 대상시설: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b>사 업 운 영 기 관</b>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b>사업목적</b>	
<p>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되고,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되었음.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원활한 제도 시행 및 정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술지원 실시</p>	
<b>지원내용</b>	
<p>① 생태독성 적용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중 생태독성 관리경험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또는 초과우려로 기술지원을 신청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생태독성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무상 지원</p>	

NO.16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및 세제지원
<b>지 원 대 상</b>	보일러 및 요·로 설비, 폐열이용설비, 동력설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등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b>사 업 운 영 기 관</b>	한국에너지공단
<b>사업목적</b>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자금 융자지원	
<b>지원내용</b>	
①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공사비 일체에 대한 자금 융자지원	

NO.17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b>지 원 대 상</b>	<p>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amp; 고탄소 배출 10개업종 중점 지원</p> <p>* 10개업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p> <p>* 대상 설비: 공기압축기, 터보압축기, 원심식송풍기, 펌프, 삼상 유도전동기, 인버터, 향온향습기, 멀티전기 히트펌프시스템, 전기냉난방기, 전기냉방기, 스크류 냉동기, 원심식 냉동기, 상업용 전기냉장고, 스마트 LED 조명시스템</p>
<b>사 업 운 영 기 관</b>	중소벤처기업부
<b>사업목적</b>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기업 특성별 컨설팅, 기술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b>지원내용</b>	
①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NO.18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b>지 원 대 상</b>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2 조에 따라 환경 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b>사 업 운 영 기 관</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사업목적</b>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환경기업을 선정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고와 근무여건 개선 도모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시 환경부장관 표창 수여</li> <li>② 시상식 개최</li> <li>③ 근로환경개선금 지급</li> </ul>	

NO.19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b>지 원 대 상</b>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중소기업 일반기업, 시멘트 제조업, 대기업 등
<b>사 업 운 영 기 관</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b>사업목적</b>	
환경산업체 성장 지원 및 기업의 녹색 환경투자에 장기 저리 융자금 지원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 (환경산업 시설설치자금/ 성장기반자금, 녹색전환 오염방지 시설자금)</li> <li>② 친환경설비투자 지원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li> <li>③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 지원 (미세먼지 시설자금)</li> </ul>	

NO.20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b>지 원 대 상</b>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b>사 업 운 영 기 관</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b>사업목적</b>	
사업장의 공정·사업전환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이자 비용 일부 지원	
<b>지원내용</b>	
<p>① 연료전환(예시: 유연탄 → LNG), 고효율기기 도입, 공정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출 우대금리* 혜택 제공</p> <p>* 최대 3%(중소기업)까지 대출금리 할인, 환경부와 취급 금융기관이 50:50 으로 우대금리 지원</p>	

NO.21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친환경설비투자 용자 지원사업
<b>지 원 대 상</b>	중소·중견기업
<b>사 업 운 영 기 관</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b>사업목적</b>	
친환경설비투자 용자 지원	
<b>지원내용</b>	
<p>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적의 설비 및 부대장치 설치·개선</p> <p>* 지원기간 : 시설자금 10년 (3년 거치 7년 상환)</p>	

NO.22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b>지 원 대 상</b>	중소기업
<b>사 업 운 영 기 관</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b>사업목적</b>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상용화 자금지원	
<b>지원내용</b>	
<p>① 녹색신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소요자금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화 지원사업(청정대기, 자원순환, 스마트물, 기후대응, 일반환경)</li> <li>* 녹색신사업 지원사업(바이오가스, 자원순환, 기후테크 등)</li> </ul>	

NO.23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ESG 환경성 컨설팅
<b>지 원 대 상</b>	중소기업(단, 조합·협회가 회원사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만 가능) ※ 조합·협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및 협회 회원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b>사 업 운 영 기 관</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 지원팀
<b>사업목적</b>	
환경경영 체계 및 환경 규제 대응 컨설팅 제공	
<b>지원내용</b>	
<p>① ESG 컨설팅(신규, 제조), ESG 멘토링(기존 참여 조합·협회 대상), 환경안전통합시스템 시범(신규, 제조) : (ESG 컨설팅) 환경오염물질 배출·자원 절약, 환경경영 체계 구축 등 : (ESG 멘토링) 멘토-멘티 연결을 통해 환경경영 노하우 전파 지원 : (시스템) 환경 규제 대응 및 자원·에너지·환경오염물질 자체 관리 지원</p> <p>② 지원규모 ESG 컨설팅 3 개 조합·협회(각 25 개사 내외), ESG 멘토링 1 개 조합·협회(10 개사 내외), 환경안전통합시스템 1 개 조합·협회(25 개사 내외)</p>	

NO.24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환경신기술 수수료 지원
<b>지 원 대 상</b>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단,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기관과 공동신청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검증수수료 총액을 신청 업체수로 나눈 분담비용의 70%이내에서 지급
<b>사 업 운 영 기 관</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b>사업목적</b>	
환경신기술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신청 시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평가수수료 일부 지원	
<b>지원내용</b>	
① 환경신기술 수수료 지원	

NO.25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녹색인증 지원
<b>지 원 대 상</b>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기술 등 사회 경제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종류: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
<b>사 업 운 영 기 관</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b>사업목적</b>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기술이 녹색분야인 지 여부를 확인하여 민간(금융권)의 자발적 참여 유도하는 제도	
<b>지원내용</b>	
① 녹색인증 지원	

NO.26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b>지 원 대 상</b>	환경분야 녹색 혁신기술, 설비를 보유한 설비 공급기업과 관련 설비를 설치할 설비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b>사 업 운 영 기 관</b>	한국환경공단
<b>사업목적</b>	
중소, 중견기업이 보유한 환경분야 녹색 혁신기술, 설비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 및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사용화 소요 자금(실규모 설치 비용)지원	
<b>지원내용</b>	
① 중소기업이 보유한 환경분야 녹색 혁신기술, 설비의 소요 자금(실규모 설치 비용)지원	

NO.27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2023년 제 1 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b>지 원 대 상</b>	신제품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b>사 업 운 영 기 관</b>	국가기술표준원
<b>사업목적</b>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조성	
<b>지원내용</b>	
① 신제품(NEP)으로 3년 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NO.28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산업통상자원부-SK 기술나눔
<b>지 원 대 상</b>	중소, 중견기업
<b>사 업 운 영 기 관</b>	한국산업기술진흥원
<b>사업목적</b>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SK가 보유한 반도체 소자, 반도체 공정, 이동통신 등 분야의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 이전하는 사업	
<b>지원내용</b>	
<p>① 반도체 소자, 반도체 공정, 이동통신, 화학공정 등 총 306 건 기술 지원 (기술제공기업: SK 하이닉스, SK 텔레콤, SK 이노베이션, SK 플래닛, SK 실트론)</p>	

NO.29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기술나눔
<b>지 원 대 상</b>	중소, 중견기업 (스타트업 기업 포함)
<b>사 업 운 영 기 관</b>	산업통상자원부
<b>사업목적</b>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한국전력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스타트업등에 무상 이전하는 사업	
<b>지원내용</b>	
① 전력관리, 환경시스템, 에너지 기타, 계측부품 등 총 211 건 기술지원 (한국전력이 양수기업에게 기술양도)	

NO.30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 추진 : KEEP+
<b>지 원 대 상</b>	5년간 총 1,000 개 중소·중견기업 지원(연간 200 개 × 5 년) *에너지 진단 이력이 없는 500~2,000toe 800 개 기업(연간 160 개) *효율개선 잠재량이 높은 2,000toe 이상 200 개 기업(연간 40 개)
<b>사 업 운 영 기 관</b>	산업통상자원부
<b>사업목적</b>	
'진단-투자-관리' 패키지 지원을 통한 획기적 효율개선	
<b>지원내용</b>	
① 에너지 원가비중*이 높은 유리, 요업, 시멘트, 반도체, 석유화학 등 소재부품 산업 및 주조·열처리 등 뿌리기업 지원추진	

NO.31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b>지 원 대 상</b>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자발적 감축 중소기업 :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 협력사,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우대 지원 *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 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금속가공업 등
<b>사 업 운 영 기 관</b>	중소벤처기업부
<b>사업목적</b>	
탄소중립 수준진단 및 지원	
<b>지원내용</b>	
<p>① 『탄소중립 수준진단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p> <p>: (수준진단) 온실가스 배출현황 진단 및 감축수단 발굴을 토대로 잠재감축량이 큰 중소기업 중심으로 선정·지원</p> <p>: (실시·설계 지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등 지원</p> <p>: (설비도입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및 추가 컨설팅 등을 지원</p> <p>* 차압터빈 시스템, 연료전환, 폐기물전처리장치,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무배출설비,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기물 열분해시설, 탄소포집기술 적용 설비 등</p> <p>** 탄소저감 효과가 인정되는 설비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p>	

NO.32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신성장기반자금 [시설, 운전자금 용자대출 (1 조 6,200 억 원 규모)]
<b>지 원 대 상</b>	<p>Net Zero 유망기업포함: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p> <p>: 신재생에너지, 물·대기 관리, 환경 정화 등 그린분야 기술 사업화 기업</p> <p>: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p> <p>: 오염물질저감설비, 저탄소·에너지효율화, 환경오염방지설비 등 도입기업</p> <p>: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p>
<b>사 업 운 영 기 관</b>	중소벤처기업부
<b>사업목적</b>	
시설, 운전자금 용자대출	
<b>지원내용</b>	
<p>①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개선 등 기계장비의 구입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 및 임차 보증금</p> <p>② 운전자금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p> <p>③ 대출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 가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 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p>	

NO.33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녹색보증
<b>지 원 대 상</b>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품목 등을 제조하는 기업(기술 보유 포함)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b>사 업 운 영 기 관</b>	-
<b>사업목적</b>	
운전, 시설자금 특화보증(신용보증기금)	
<b>지원내용</b>	
<p>①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유망기업을 신보에 추천하고, 신보는 추천된 기업에 대해 '기후기술평가'를 반영하여 운전·시설자금 보증지원</p> <p>: 탄소중립특화보증(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 0.2% 차감</p> <p>: 탄소중립프로젝트보증(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 0.5% 고정요율</p> <p>보증요율 : 95%</p> <p>지원한도 : 보증한도는 중소기업 100 억 원, 중견기업 200 억 원</p>	

NO.34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지 원 사 업 명	기후환경보증
지 원 대 상	<p>기후변화 적응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산업 등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성장산업</li> </ul> <p>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산업 영위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산업</li> </ul> <p>물, 환경복원·복구, 환경안전·보건, 자원순환 등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영위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산업</li> </ul> <p>청정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의 생산, 공급 및 이용과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과 연관된 산업 영위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기술기업</li> </ul> <p>기후변화에 대응·적응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친환경에너지 자원을 개발·확보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저탄소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는 기술(이하 "기후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기업</p>
사 업 운 영 기 관	중소벤처기업부
<b>사업목적</b>	
기후환경 신기술사업자 보증(기술보증기금)	
<b>지원내용</b>	
<p>① 기후·환경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운전 또는 시설자금 우대지원 : 보증비율 상향(최대 95%), 보증료율 감면(0.2%)</p>	

NO.35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신재생에너지보증
<b>지 원 대 상</b>	<p>신재생에너지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사업 영위 기업(발전기업)</li> </ul> <p>: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 사업등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판매하는 기업(시설자금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기술보유·품목 생산 기업(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li> </ul> <p>: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운전/시설자금 지원)</p>
<b>사 업 운 영 기 관</b>	중소벤처기업부
<b>사업목적</b>	
신재생에너지분야기업 운전, 시설자금보증	
<b>지원내용</b>	
<p>① 추가한도지원 : 기존 운전자금산정 한도금액에 탄소가치평가금액을 가산</p> <p>: 시설자금은 해당 소요자금한도 이내 지원</p> <p>: 기타 우대사항</p> <p style="padding-left: 20px;">보증료: (발전기업) 0.5% 고정보증료를 적용 (산업기업) 0.2% 감면 적용</p> <p style="padding-left: 20px;">보증비율: 95% 적용</p>	

NO.36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 / 지원규모 : 50 개사 내외(예산 52.5 억 원)
<b>지 원 대 상</b>	<p>감축 규제대상이나 아니나,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 :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 수출기업,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협력사, 탄소다배출업종* 영위기업 등 우대지원</p> <p>* 탄소다배출업종 : 화학제조, 비금속제조, 식료품제조, 제지업, 금속가공업 등</p>
<b>사 업 운 영 기 관</b>	중소벤처기업부
<b>사업목적</b>	
탄소중립설비도입 비용 지원(보조율 50%)	
<b>지원내용</b>	
<p>① 탄소중립 설비도입 실시·설계 및도입비용 지원(보조율 50%) : (실시·설계지원) 탄소중립수준진단을 토대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도입에 필요한 : (설비도입지원)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등 지원</p>	

NO.37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b>지 원 대 상</b>	<p>녹색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p> <p>-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p> <p>-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혁신형 중소기업</p>
<b>사 업 운 영 기 관</b>	중소벤처기업부
<b>사업목적</b>	
녹색기술보유기업(그린벤처)R&D, 사업화 지원	
<b>지원내용</b>	
<p>① 그린벤처 기업이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동시 지원 : (R&amp;D) 기술개발 자금 지원(3년·12.5억 원 내외)</p> <p>* 총 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물 90%) 이상</p> <p>- (사업화) 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테스트 장비 이용, 인·검증, 수출지원 등 사업화 자금 지원(3년 17.5억 원 내외)</p> <p>* 총 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50%↑ + 현물 50%) 이상</p>	

NO.38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R&D)
<b>지 원 대 상</b>	탄소다배출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중소기업)과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포함)의 컨소시엄 : (중소기업 탄소다배출업종) 300 인 미만 사업장 배출량 상위 업종으로 식료품제조업, 제지업, 금속가공업,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1 차금속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①) 선도모델 개발을 공동 수행할 기관(학·연) - (공동연구개발기관 ②)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실증할 Test-bed 를 제공하고 개발된 선도모델을 적용할 수요기업(중소기업)
<b>사 업 운 영 기 관</b>	중소벤처기업부
<b>사업목적</b>	
'22 년 신규, R&D 컨소시엄(탄소다배출업종) 최대 2 년, 20 억 원	
<b>지원내용</b>	
①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동일·유사업종 내 중소기업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지원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최대 2 년, 20 억 원(80% 이내 지원) (지정공모)	

NO.39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중소기업 Net Zero 기술혁신개발사업(R&D)
<b>지 원 대 상</b>	중소기업을 주관연구 개발기관으로 하고, 공공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 개발기관으로 하는 2 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탄소중립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으로 탄소중립 신산업 미래유망기술 개발을 주도
<b>사 업 운 영 기 관</b>	중소벤처기업부
<b>사업목적</b>	
'22 년 신규, R&D 컨소시엄(저탄소·신유망 분야) 최대 2 년 15 억 원(지정), 최대 3 년 30 억 원(공모)	
<b>지원내용</b>	
<p>① 중소형 규모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탄소저감, 탄소지원화·활용 분야 미래 유망기술* 개발지원</p> <p>* (미래유망기술) 이차전지, 저전력반도체, 바이오, 그린수소, 그린서비스, CCUS</p> <p>: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최대 2 년, 15 억 원(80% 이내 지원) (품목지정)</p> <p>: 최대 3 년, 30 억 원(80% 이내 지원)(지정공모)</p>	

NO.40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보급사업
<b>지 원 대 상</b>	뿌리기술, 섬유 등 탄소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이 시급히 필요한 과제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b>사 업 운 영 기 관</b>	-
<b>사업목적</b>	
[스마트 공장] - 탄소다배출 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b>지원내용</b>	
① (진단·설계 컨설팅) 기업의 에너지 이용상태와 손실 요인 등 에너지 현황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②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제조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관리 및 공정 혁신 솔루션(FEMS, MES 등) 및 이와 연계된 계측 시스템, 제어 시스템, 자동화 설비 등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③ (고효율 설비 교체) 에너지 다소비, 노후설비 등 유틸리티 설비를 중심으로 에너지 감축에 효과적인 고효율 설비로 교체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이내, 기초단계 7천만 원, 동일수준 7천만 원, 고도화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	

NO.41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b>지 원 대 상</b>	[지자체 지원 사업(*경기도)] - 친환경유망기업 대상, 7 개사(친환경소재 및 저탄소 분야 관련 기업)
<b>사 업 운 영 기 관</b>	중소벤처기업부
<b>사업목적</b>	
	국내외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산업을 육성하고, 도내 유망 기업 발굴 및 기술경쟁력 강화
<b>지원내용</b>	
①	② 시제품개발, 성능평가, 인증, 판로개척 등 패키지 지원 : 지원한도: 기업 당 5 천만 원 이내

NO.42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e-safe 환경안전 기술지원단 운영
<b>지 원 대 상</b>	환경시설 운영·관리에 애로를 겪는 소규모 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 횟수가 많은 중점관리사업장
<b>사 업 운 영 기 관</b>	중소벤처기업부
<b>사업목적</b>	
	도내 소규모사업장 및 중점관리업체의 안정적 환경관리지원을 위한 맞춤형 환경기술 지원으로 자율적인 환경개선 유도
<b>지원내용</b>	
	① 사업장 신청 시 원하는 분야를 선택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 ② 시설 보수·교체·증설 등 시설개선 필요시 자금지원사업 및 용자 안내 ③ 행정절차 안내, 법령 및 제도 개정사항 등 행정적 지원

NO.43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지원
<b>지 원 대 상</b>	도내 액체연료 사용시설 설치사업장 중 청정연료(LPG, LNG, 전기 등) 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장
<b>사 업 운 영 기 관</b>	중소벤처기업부
<b>사업목적</b>	
대기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액체연료 사용시설을 청정연료(LPG, LNG, 전기 등)로 전환하여 미세먼지 등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액체연료 사용시설 → 청정연료(LPG, LNG, 전기 등) 사용시설 전환시 지원</li> <li>② 총 공사비용의 90% 지원 (최대 45,000 천 원), 자부담 10%</li> </ul>	

## 제2장. 사회 지원사업

No	지원사업명	지원분야		
		컨설팅	지원	수상
1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
2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	-	-
3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	○	-
4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	-	○	-
5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大賞) 선정 지원	-	○	○
6	일자리함께하기지원	-	○	-
7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	-
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
9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	-
10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	-
1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	-
12	고용유지지원금	-	○	-
13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사업)	-	○	-
1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	○	-
15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	-	-
16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	○	-
17	출산전후휴가급여	-	○	-
18	착한기업 선정 및 CSR 활성화	-	○	-
19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	○	-

※ 지원사업 운영기간은 사업운영기관별 상이한바, 별도 확인 필요

NO.01

컨설팅	지원	수상
-	○	-

지 원 사 업 명	2023 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 원 대 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 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 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 인 이상도 가능)
사 업 운 영 기 관	고용노동부
<b>사업목적</b>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	
<b>지원내용</b>	
<p>① 신규채용 청년 1 인당 월 최대 60 만원씩 1 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 년 근속 시 480 만원 일시 지원 (2 년간 최대 1,200 만원)</p>	

NO.02

컨설팅	지원	수상
○	-	-

지 원 사 업 명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지 원 대 상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사 업 운 영 기 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b>사업목적</b>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 52 시간제 현장안착 노력	
<b>지원내용</b>	
<p>①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1:1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장 노동시간 진단 + 단축 방안 제시 + 정부지원 제도 안내 등) ②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전문가 컨설팅 수행 기관(2 월중 수행 기관 선정 예정)등에 문의·신청</p>	

NO.03

컨설팅	지원	수상
-	○	-

<b>지 원 사 업 명</b>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b>지 원 대 상</b>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b>사 업 운 영 기 관</b>	고용노동부
<b>사업목적</b>	
유연근무제를 도입 · 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 · 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b>지원내용</b>	
<p>① 유연근로제 간접노무비 지원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 만원) *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 명 지원 (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30 명 지원)</p>	

NO.04

컨설팅	지원	수상
-	○	-

<b>지 원 사 업 명</b>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
<b>지 원 대 상</b>	재택 ·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근무혁신 이행'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
<b>사 업 운 영 기 관</b>	고용노동부
<b>사업목적</b>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통한 일 · 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b>지원내용</b>	
<p>①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에 사업주가 투자비용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000 만원 지원 *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요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p>	

NO.05

컨설팅	지원	수상
-	○	○

<b>지 원 사 업 명</b>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大賞) 선정 지원
<b>지 원 대 상</b>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사업장 단위 신청은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b>사 업 운 영 기 관</b>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b>사업목적</b>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 지원함으로써 상생 · 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b>지원내용</b>	
① 선정 기업엔 행정상/금융상 우대 * 행정상 우대 : 정부포상, 정기근로감독 면제,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선발 가점, 상품용기 등에 우수기업 표식, 소개책자 제작 유관기관에 비치,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우대, 계약 적격심사시 우대, 세무조사 유예 (모범납세자에 한함), 납세담보 제공 면제(모범납세자에 한함),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현역인원 배정시 우대, 클린산업 인증시 우대 * 금융상 우대: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NO.06

컨설팅	지원	수상
-	○	-

<b>지 원 사 업 명</b>	일자리함께하기지원
<b>지 원 대 상</b>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한 기업 * 주 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15513 호)에 따라 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교대제 도입·확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 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주 평균 초과노동시간을 2 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b>사 업 운 영 기 관</b>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b>사업목적</b>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주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순환제 등)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b>지원내용</b>	
① 인건비 및 임금보전 지원	

NO.07

컨설팅	지원	수상
-	○	-

지 원 사 업 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지 원 대 상	만 50 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 업 운 영 기 관	고용노동부
<b>사업목적</b>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	
<b>지원내용</b>	
① 신규 고용 근로자 1 인당 월 80 만원 지원 (중견기업은 월 40 만원)	

NO.08

컨설팅	지원	수상
-	○	-

지 원 사 업 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 원 대 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 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 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사 업 운 영 기 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b>사업목적</b>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	
<b>지원내용</b>	
① 5 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 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최대 80 만원, 최장 1 년간 지원	

NO.09

컨설팅	지원	수상
-	○	-

<b>지 원 사 업 명</b>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b>지 원 대 상</b>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단, 고용보험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 (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 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b>사 업 운 영 기 관</b>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b>사업목적</b>	
<p>우수한 여성인력이 결혼 및 육아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생산성과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장 내 일-가정의 양립문화 조성이 필요하며,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문화의 필요조건임. 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함.</p>	
<b>지원내용</b>	
<p>①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등에 따라 소요 비용의 60-90%로 차등지원</p>	

NO.10

컨설팅	지원	수상
-	○	-

<b>지 원 사 업 명</b>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b>지 원 대 상</b>	<p>상시근로자수 300 인 미만 기업 및 소속 노동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p> <p>*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2 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사업주단체)이면서, [영유아보육법]제 10 조제 4 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중인 경우 보육현원에 따라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차등 지원</p> <p>* 단, 고용보험 체납사항이 없고, 매월 말일 기준 자사 소속 피보험자 자녀수가 전체의 3 분의 1 이상 또는 4 분의 1 이상이면서 타사포함 전체 피보험자 자녀수가 2 분의 1 이상일 것</p> <p>* 공동시설인 경우, 1 개사 자녀비율이 80%미만일 것</p>
<b>사 업 운 영 기 관</b>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b>사업목적</b>	
<p>우수한 여성인력이 결혼 및 육아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생산성과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장 내 일-가정의 양립문화 조성이 필요하며,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문화의 필요조건임. 이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에 운영비를 지원함.</p>	
<b>지원내용</b>	
① 1 인당 월 지급금액 차등 지원	

NO.11

컨설팅	지원	수상
-	○	-

<b>지 원 사 업 명</b>	사내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b>지 원 대 상</b>	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사내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b>사 업 운 영 기 관</b>	근로복지공단
<b>사업목적</b>	
근로자 복지 향상 및 행복을 위한 정부 지원	
<b>지원내용</b>	
① 지원대상 해당 기금법인에 근로복지기금 지원	

NO.12

컨설팅	지원	수상
-	○	-

<b>지 원 사 업 명</b>	고용유지지원금
<b>지 원 대 상</b>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b>사 업 운 영 기 관</b>	고용노동부
<b>사업목적</b>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b>지원내용</b>	
<p>① 지원한도 1 일 상한액 6.6 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 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 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 일)</p> <p>② (휴업) 1 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 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p> <p>③ (휴직) 근로자에게 1 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p> <p>④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p>	

NO.13

컨설팅	지원	수상
-	○	-

<b>지 원 사 업 명</b>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사업)
<b>지 원 대 상</b>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b>사 업 운 영 기 관</b>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b>사업목적</b>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 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근로자) 사회보험 신규가입 노동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li> <li>② (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계약당사자(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li> </ul>	

NO.14

컨설팅	지원	수상
-	○	-

<b>지 원 사 업 명</b>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b>지 원 대 상</b>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b>사 업 운 영 기 관</b>	고용노동부
<b>사업목적</b>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훈련비, 유급휴가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 등 지원</li> </ul>	

NO.15

컨설팅	지원	수상
○	-	-

지 원 사 업 명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지 원 대 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사 업 운 영 기 관	고용노동부
사업목적	
혁신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내용	
<p>① 사업장 희망 분야 컨설팅 무료지원(10 주~21 주)</p> <p>* (컨설팅 분야) 노사파트너십, 작업조직·환경개선, 고용문화개선, 임금체계개선, 평가체계개선, 장시간근로개선, 평생학습체계 구축, 장년고용안정, 안전한 일터 조성</p> <p>* 근로자수 1,000 명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 일부(30%)를 부담</p>	

NO.16

컨설팅	지원	수상
○	○	-

지 원 사 업 명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지 원 대 상	상시근로자수 300 인 미만 기업 및 소속 노동자
사 업 운 영 기 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사업목적	
기업의 EAP 도입을 촉진하고,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저해요인 해결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 도모	
지원내용	
① 온·오프라인 전문가 상담 무상제공	

NO.17

컨설팅	지원	수상
-	○	-

<b>지 원 사 업 명</b>	출산전후휴가급여
<b>지 원 대 상</b>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한 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b>사 업 운 영 기 관</b>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b>사업목적</b>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휴를 통하여 90일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 74 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b>지원내용</b>	
<p>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p> <p>②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 조) : 제조업 500 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 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 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 인이하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p> <p>③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p>	

NO.18

컨설팅	지원	수상
-	○	-

지 원 사 업 명	착한기업 선정 및 CSR 활성화
지 원 대 상	(경기)도내 소재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경제조직
사 업 운 영 기 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목적	
도내 사회공헌 기업을 발굴 선정하고 적극 홍보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착한기업 인증마크 사용권 및 인증서, 인증현판 지원 (3년)</li> <li>② 착한기업 사업화 및 마케팅 자금 지원</li> <li>③ 기업 당 최대 1,000만 원 (부가세제외 총금액의 80% 한도)</li> <li>④ 중소기업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li> <li>⑤ 이해관계자 관리, 사회공헌,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고객만족 등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제공</li> </ul>	

NO.19

컨설팅	지원	수상
-	○	-

지 원 사 업 명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지 원 대 상	(경기)도내 장애인기업 생산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청년기업 생산품, 여성기업 생산품, 자활생산품, 노인생산품 등
사 업 운 영 기 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목적	
사회적 가치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 홍보 및 판로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매출 증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 도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경기 '착착착' 온라인쇼핑몰(www.chack3.com) 운영</li> <li>② 온·오프라인 판로지원</li> <li>③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지원</li> <li>④ SNS 및 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홍보물 제작 및 배포</li> </ul>	

### 제3장. 안전 지원사업

No	지원사업명	지원분야	
		안전진단	설비지원
1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	○
2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	○
3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
4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건설업	-	○
5	건강디딤돌(작업환경측정)	○	-
6	건강디딤돌(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
7	안전투자 혁신사업	-	○

※ 지원사업 운영기간은 사업운영기관별 상이한바, 별도 확인 필요

NO.1

		안전진단	설비지원
		-	○
지 원 사 업 명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지 원 대 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3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		
사 업 운 영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b>사업목적</b>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b>지원내용</b>			
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지게차, 크레인, 국소배기장치 등)			

NO.2

		안전진단	설비지원
		-	○
지 원 사 업 명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지 원 대 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기준'의 사업주 / ※건설업은 제외		
사 업 운 영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b>사업목적</b>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에 의거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생김.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8월 18일부터 적용이며, 이에따른 소기업 규모 사업장 비용지원			
<b>지원내용</b>			
①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 전용의 공간, 휴게실 내부의 휴게환경 조성에 필요한 물품 또는 설비			

NO.3

		안전진단	설비지원
		-	○
지 원 사 업 명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지 원 대 상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 태양광 설치·작업공정 보유 사업장(50억 미만 건설업), 엘리베이터 설치·작업공정 사업장(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등		
사 업 운 영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b>사업목적</b>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지원			
<b>지원내용</b>			
① 사망사고 예방 품목 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정액지원) : 프레스, 전단기의 안전장치 등과 같은 방호장치 혹은 안전장치 : 지게차 안전장치(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등) : 밀폐공간작업 중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긴급구조설비 등) : 그 밖에 사회적 이슈품목			

NO.4

		안전진단	설비지원
		-	○
지 원 사 업 명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건설업		
지 원 대 상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출근·콘크리트공사업」과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사 업 운 영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b>사업목적</b>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재해 예방 등을 위한 보조지원			
<b>지원내용</b>			
① 사망사고 예방 품목 또는 추락사고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정액지원) : 시스템비계(인증제품): 건설현장 구조물 외부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안전방망(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 적합품): 낙하물방지망, 추락방호망, 수직보호망 등 : 사다리형 작업발판(S 마크 인증품): 최대높이 3.5m 이하 사다리, 시스템 비계 등 : 지원한도: 건설현장 당 3,000만원 까지			

NO.5

		안전진단	설비지원
		○	-
지 원 사 업 명	건강디딤돌(작업환경측정)		
지 원 대 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관련 별표2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에 한함		
사 업 운 영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b>사업목적</b>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b>지원내용</b>			
① 작업환경측정 지원비용 지원 (최초측정 시 전액지원 / 기존 측정 사업장은 측정비용의 80% 지원)			

NO.6

		안전진단	설비지원
		○	-
지 원 사 업 명	건강디딤돌(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지 원 대 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에 한함		
사 업 운 영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b>사업목적</b>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b>지원내용</b>			
① 특수검진 건강진단비용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4에 따른 유해인자 별 제1, 2차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원			

NO.7

		안전진단	설비지원
		-	○
지 원 사 업 명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 원 대 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사 업 운 영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b>사업목적</b>			
사망사고 발생강도와 빈도가 높은 위험한 기계 또는 유해한 공정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컨설팅 및 금융지원 사업			
<b>지원내용</b>			
① 설비 제작비 등 사업비 50% 지원 : 위험기계교체: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프레스 등 노후위험기계 교체 : 공정개선: 뿌리산업(주조, 소성 등) 및 *고위험 3대업종의 노후화된 공정 및 설비 *고위험 3대업종(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제4장. 지배구조·경영 지원사업

No	지원사업명	지원분야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1	친환경경영(ESG)컨설팅 지원사업	○	-	○	-
2	글로벌 ESG+ 사업	○	-	-	-
3	기업 ESG 경영도입기반조성	○	-	-	-
4	중소기업 ESG 인식제고	-	-	-	○
5	중소기업 ESG 생태계 조정	-	-	-	○
6	중소기업 ESG 거버넌스 구축	-	-	-	○
7	소셜벤처 임팩트보증	-	-	-	○

※ 지원사업 운영기간은 사업운영기관별 상이한바, 별도 확인 필요

NO.01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
<b>지 원 대 상</b>	국내 제조분야 중소기업(업종(협회) 단위로 지원) * 산업계 경영환경 분석으로 우선지원 업종을 선정 후 2023 년 모집공고 예정('23.3 월)
<b>사 업 운 영 기 관</b>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 경영지원 TF
<b>사업목적</b>	
국내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전환 지원을 위해 제조공정부터 경영체제까지 맞춤형 컨설팅 제공	
<b>지원내용</b>	
① 기업의 환경경영 전환, 원가 절감 등을 맞춤형 컨설팅 제공(현물 지원 X)	

NO.02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글로벌 ESG+사업
<b>지 원 대 상</b>	해외 ESG 활동에 관심 있는 우리 중소·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창업벤처기업 또는 이들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및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글로벌 ESG) 상·하반기 2회 대내외 공모 사업으로 추진 :(+형 사업) 긴급 재난, 보건·의료 및 프로젝트 특화형만 수시사업으로 추진
<b>사 업 운 영 기 관</b>	중소벤처기업부
<b>사업목적</b>	
E형, S형, G형, +형 해외 ESG 활동 지원	
<b>지원내용</b>	
<p>① E형(그린 이니셔티브) :(글로벌 녹색협력) 저탄소·친환경 소재 제품, 교육, 기술·경영 지원 활동을 통해 친환경 가치소비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협력 구축</p> <p>② S형(인도적 상생지원) :(상생협력) 현지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UN이 지정한 지속가능 발전 17개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기부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p> <p>③ G형(지속가능글로벌 경영구축) : 국내·외 글로벌 ESG 활동이 우수한 기업 포상 : 국내 기업·기관 대상 ESG 역량 강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 주요 ESG 동향 및 정보 확산 온라인 세미나 개최(연 1회) : 국내외 구직자 대상, 대·내외 ESG 유망기업 채용 상담회</p>	

NO.03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기업 ESG 경영도입기반조성
<b>지 원 대 상</b>	100 개사(창업, 유망, 중견기업)
<b>사 업 운 영 기 관</b>	중소벤처기업부
<b>사업목적</b>	
글로벌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인식확산 추진 · ESG 수준 실태조사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업진단 및 ESG 수준 등 실태조사</li> <li>② ESG 도입 컨설팅</li> <li>③ ESG 인식확산</li> <li>④ 설명회, 간담회 연계한 교육</li> </ul>	

NO.04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중소기업 ESG 인식제고
<b>지 원 대 상</b>	중소기업
<b>사 업 운 영 기 관</b>	중소벤처기업부
<b>사업목적</b>	
중소기업 맞춤형 ESG 체크리스트 마련 및 활용과 ESG 교육 · 컨설팅 · 실태조사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소기업 맞춤형 ESG 체크리스트 마련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 기업진단 시스템(K-doctor)을 통해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li> <li>: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 중 일부에 대해 시범적용('22 6 백 개)</li> <li>: 중소기업 ESG 플랫폼 구축</li> </ul> </li> <li>② 중소기업 ESG 교육 · 컨설팅 ·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예산('22 정부안 618 억 원) ESG 컨설팅</li> <li>: 중소기업 ESG 실태조사 및 사례 발굴, 'ESG 경영안내서' 제작 배포</li> </ul> </li> </ul>	

NO.05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중소기업 ESG 생태계 조정				
<b>지 원 대 상</b>	중소기업				
<b>사 업 운 영 기 관</b>	중소벤처기업부				
<b>사업목적</b>					
민간의 자발적인 ESG 확산 유도과 ESG 부문별 맞춤 지원					
<b>지원내용</b>					
<p>① 민간의 자발적인 ESG 확산 유도                      : 공급망 내 ESG 협력: 대·공기업 등의 협력사 ESG 교육·컨설팅, 협력사 ESG 공급망 실사 지원(22 대한상의)                      * ESG 지원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공급망 외 협력: 'ESG 자상한 기업' 추가 발굴, 인센티브 부여                      *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수출지원사업 및 중견기업 R&amp;D 참여 우대 등                      ESG 스타트업 육성: 임팩트 보증 및 펀드 등 집중지원</p> <p>1) ESG 부문별 맞춤 지원                      : 수출규제 대응: 인증획득, 긴급코칭, 정보제공 등                      : 탄소중립 지원: 자금, 기술, 사업전환                      : 사회적 책임 이행 중소기업 지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주52시간제 적용기업</td> <td>중소기업혁신바우처 규제대응컨설팅, 지역신보·기보 우대보증(보증료△0.3%) 등</td> </tr> <tr> <td>중대재해 예방</td> <td>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 등</td> </tr> </table> <p>: 투명·윤리경영 지표 반영: 지업사업, 사업승계 지원</p>		주52시간제 적용기업	중소기업혁신바우처 규제대응컨설팅, 지역신보·기보 우대보증(보증료△0.3%) 등	중대재해 예방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 등
주52시간제 적용기업	중소기업혁신바우처 규제대응컨설팅, 지역신보·기보 우대보증(보증료△0.3%) 등				
중대재해 예방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 등				

NO.06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중소기업 ESG 거버넌스 구축
<b>지 원 대 상</b>	중소기업
<b>사 업 운 영 기 관</b>	중소벤처기업부
<b>사업목적</b>	
ESG 거버넌스 구축 지원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소기업 ESG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li> <li>② 지역별 ESG 지원사업 추진, 확산</li> <li>③ 민간평가기관 MOU 및 지원</li> </ul>	

NO.07

경영	설비 투자	컨설팅	기타
-	-	-	○

<b>지 원 사 업 명</b>	소셜벤처 임팩트보증
<b>지 원 대 상</b>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에 따른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판별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각각 70 점 이상인 기업
<b>사 업 운 영 기 관</b>	중소벤처기업부
<b>사업목적</b>	
소셜벤처기업 운전, 시설자금보증(기술보증기금)	
<b>지원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상 채무 : 운전 및 시설자금</li> <li style="padding-left: 20px;">: 보증 비율 : 100% 전액 보증</li> <li style="padding-left: 20px;">: 보증료 : 0.5% 감면</li> </ul>	

05

# 유의사항



# 유의사항 (Disclaimer)

## ESG 평가(컨설팅) 보고서 활용시 유의사항

- (1) (주)이크레더블(이하 '당사')은 201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의거하여 신용조회업무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기업신용조회업의 부수업무로서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ESG 평가의 목적은 환경·사회·거버넌스·인권·반부패 등 비재무적 정보를 확인, 기업의 운영 및 경영전략의 내재화를 확인하여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 (3) 당사는 본 ESG 평가와 관련하여 당사의 행동강령과 내부통제요강에 따라 독립성의 준수와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한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4) 당사가 제공하는 ESG 등급은 ESG 평가를 받는 회사(이하 '회사')의 ESG 에 대한 분석 시점에서의 의견으로 해당 등급은 신용평가 등급과는 다릅니다. 또한, ESG 평가의 결과가 신용평가에 동등한 결과를 보장 또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자료(이하 '보고서')는 회사의 ESG 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SG 등급 및 보고서에 포함된 당사의 견해는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5) ESG 등급 산출 및 보고서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회사와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자료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ESG 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회사 및 회사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정보의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해 일체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보고서의 모든 정보들은 ESG 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ESG 등급 및 보고서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6)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 및 평가업무 방법론에 관한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보고서 및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유출, 무단 전재, 복사, 유포(재배포), 전송, 전달, 인용, 가공(재가공), 재판매 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